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5
----------	------

발의연월일 : 2024. 7. 22.

발의자 : 윤준병 · 박민규 · 박희승
복기왕 · 서영교 · 허종식
이해식 · 민홍철 · 신영대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출산 · 양육 등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및 제104조의3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800만원”을 “1천만원”으로, “1,450만원”을 “1,650만원”으로, “1,550만원”을 “1,75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4(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출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4,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설>

600만원-----
1천만원-----
1,650만원-----

1,750만원-----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4(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출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야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u>제122조</u>	② -----

